



의약품 등의 매입가격 공개와 원가세일에 대한 부정 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3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17년(네) 제10007호
판결 일자	2006. 2. 27.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이코크		
피고 (항소인)	타이쇼(大正)제약 주식회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금지법		
영업 비밀	피고 상품의 매입가격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원가세일		

02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가정용품, 화장품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7. 8. 4.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피고 상품을 발주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01. 1월부터 5월까지, 원고의 복수의 점포에서 피고 상품의 매입가격을 공개하여 실시하는 세일(“원가세일”)을 실시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	피 고 (항소인)
본건 거래기본계약에는 임의 해지 조항이 없고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약 고지는 효력이 없다.		본건 거래기본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 뿐 아니라, 원고의 원가세일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관습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되므로, 본건 거래기본계약은 피고의 해약 고지에 의해 유효하게 해약되었다.
원고가 본건 거래기본계약 3조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계약의 문언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고의 원가세일은 배신행위 또는 불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본건 거래기본계약 3조에 위배되므로, 본건 거래기본계약은 피고의 해약 고지에 의해 유효하게 해약되었다.
신의칙상 부수 의무의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려면 해당 의무 위반이 계약의 중심적인 급부 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바, 본건의 경우 중심적 급부 이행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약 고지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원가세일은 본건 거래기본계약에 관한 신의칙상 부수 의무에 위배되므로, 본건 거래기본계약은 피고의 해약 고지에 의해 유효하게 해약되었다.

04 판결 요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에 해당하려면 ① 그 정보가 영업비밀일 것, ②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제시받을 것, ③ 부정경쟁 기타 그 밖의 다른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바, 피고 상품의 매입가격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②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위 ③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매점은 매입가격을 공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공개한 경우에는 매입처와 지속되었던 거래계약이 즉시 해약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상관습 또는 거래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원가세일을 한 것(차별적 공개)에 의하여 피고의 영업 비밀이 경업 타사에 알려져 경쟁상 불이익한 입장에 놓인 것, 매입가격이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져 피고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 원고 이외의 약국, 의약품 취급점에서 피고 상품의 판매가 곤란해진 것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즉시 해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협력으로 피고 상품을 매입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지를 배포하여 허위 선전을 한 것은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Key Point

상품의 매입가격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적 원가공개만으로는 지속적 거래관계의 해지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

1개 점포에서 1회에 걸쳐 합의에 의한 원가 세일이라고 허위선전 한 것만으로는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